

시행일 고시.공고 관공리하

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

우120-030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7-1 / 전화 (02)390-7324 / 전송 363-5258
처리부서 : 과징과 (서대문별관 3층) 담당 김정욱

문서번호 과징 11250-222
시행일자 1998. 9. 29. (년)
(경유) (제1안)
수신 내부결재
참조

고시.공고
1998. 9. 29
제 1998-32 호 ★◎

취급		시 장	결재 1998. 9. 29 부장 No. 951
보존	년	백종욱	
본부장	전 결		
차 장	김홍익		
부 장	김기영	법무담당관 심사필	
과 장	김석영	기안 김정욱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코자 합니다.

첨부 : 공고문안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서울특별시장

참조 홍보담당관

제목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시보게재 의뢰

1.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코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공고문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

원본대조필 김석영

공 고 (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1998-52/호

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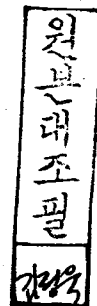
1.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이 입법예고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(전화 : 3907-324)로 문의바랍니다.

1998. 10. 10

서울특별시장

가. 개정취지

1개의 수도계량기로 수도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(다가구·원룸주택 포함)에 대한 세대분할기준이 종전 건축허가호수기준에서 건축허가호수보다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기준으로 세대분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가 개정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세대분할 신고방법 및 신고서식 등을 정비·보완하기 위함



나. 주요내용

○ 세대분할 신고방법 및 관계서식을 정함

- 신고방법 : 건축허가호수보다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가 많은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가 관할 수도 사업소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 세대분할적용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10월 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(참조 :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연락전화 : 3907 - 324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주소·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

다. 기타 참고사항(연락전화번호 등)

